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2년 03월 31일 오전 9시

2. 장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 이스트빌딩 지하1층 세미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 2) 영업보고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4)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9기(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2-2호 의안: 관계법령 보완의 건

제3호 의안: 사외이사 박우진 신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6-1호 의안: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6-2호 의안: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2년 3월 21일 09시 ~ 2022년 3월 30일 17시(기간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 참고 사항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총회장 입구에서는 주주총회 참석자의 체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참석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미착용 또는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대상, 밀접접촉대상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참석주주님들에 대해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대표이사 정상원 (직인 생략).

<주주총회 목적사항 관련 자료>

첨부1. 제2-1호 의안(사업목적 추가의 건) 관련 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공급업 2. 소프트웨어 자문 및 용역 3. 하드웨어 제조 공급업 4. 정보통신서비스업 5. 인터넷 관련 제반 사업 6. 전자상거래 7.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8. 정보통신 관련 광고 및 출판 사업 9. 부동산 임대업(신설 2021.03.24) 10. <u>경영지원업무(신설 2021.03.24)</u> 11. <u>전 각항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대행업(개정 2021.03.24)</u> 12. <u>기타 목적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개정 2021.03.24)</u> 	<p>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공급업 2. 소프트웨어 자문 및 용역 3. 하드웨어 제조 공급업 4. 정보통신서비스업 5. 인터넷 관련 제반 사업 6. 전자상거래 7.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8. 정보통신 관련 광고 및 출판 사업 9. 부동산 임대업(신설 2021.03.24) 10. <u>인공지능 기반 버추얼 휴먼 개발 및 공급업</u> 11. <u>인공지능 기반 버추얼 휴먼 상품 제조 및 판매업</u> 12. <u>인공지능 기반 버추얼 휴먼 활용 공연사업</u> 13. <u>인공지능 기반 버추얼 휴먼 활용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콘텐츠 판권 유통사업, 콘텐츠 활용 파생사업</u> 14. <u>그 외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세계(VR) 및 가상현실업 관련 기획, 제작, 서비스업</u> 15. <u>광고기획, 광고매체 운영 및 판매, 옥외 광고업 및 기타 광고업 등 광고 관련 사업</u> 16. <u>캐릭터상품 제조, 판매업 및</u> 	<p>- 10~16항: 신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u>제3자 라이선싱 부여</u> <u>17.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u> <u>18.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u> <u>19.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업</u> <u>20. 전 각항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대행업</u> <u>21. 기타 목적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개정 2022.03.31)</u>	- 17~19항: 자회사 관련 업무 추가 - 20~21항: 조문번호 수정

첨부2. 제2-2호 의안(관계법령 보완의 건) 관련 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p> <p>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u>상법 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u>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17, 2007.3.9, 2007.4.30, 2009.3.27)</p> <p>2. ~ 5. (생략)</p> <p>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u>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사임 또는 사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임 또는 사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u> (개정 2000.7.7, 2007.3.9, 2009.3.27, 2019.3.26)</p>	<p>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p> <p>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u>상법 제 54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2호 규정</u>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17, 2007.3.9, 2007.4.30, 2009.3.27, 2022.03.31)</p> <p>2. ~ 5. (생략)</p> <p>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u>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u> (개정 2000.7.7, 2007.3.9, 2009.3.27, 2019.3.26, 2022.03.31)</p>	<p>-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위임하고 있는 바를 반영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p> <p>- 상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한 경우를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서 제외함.</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7. ~ 9. (생략)	7. ~ 9. (생략)	
(신설)	제14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 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22.03.31)	- 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 반 영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u>2021년 3월 24일부</u> <u>터</u> 시행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 례)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u>2022년 3월 31일부</u> <u>터</u> 시행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 례) (좌동)	- 시행일 명시

첨부3. 제3호 의안(사외이사 박우진 신규 선임의 건) 관련 별지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우진	1971.04.2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우진	개인사업자	2014.07~현재	개인사업운영	해당사항 없음
		2013.07~2014.06	이스트소프트 경영개선실 실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우진	부	부	부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박우진 사외이사 후보
 본인은 사외이사이자 경영전문가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고 회사 경영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이익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박우진 사외이사 후보
 상기 후보자 박우진은 법인 창업 경험과 풍부한 경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다양한 시각에서 충분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